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대응 상황

농림축산식품부

1. 신고현황(3. 31기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금까지 총 34건의 AI 의심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양성 28건(7개 시도, 18개 시·군), 음성 6건이라고 밝혔다.

2. 야생철새

야생철새(분변 포함)는 427건(시료기준)이 검사 의뢰되었으며, 검사 의뢰된 것 중 고병원성 AI양성은 총 36건*이며, 음성은 382건이고 검사 중은 9건이며,

- 지금까지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AI 양성이 검출된 지역은 7개 시·도, 16개 시·군**이다.

* 양성내역 : 가창오리 10, 철새분변 7, 청둥오리 5, 큰기러기 4, 흰뺨검둥오리·쇠오리·쇠기러가 각각 2, 큰고니·대백로·논병아리·물닭 각각 1

** 검출지역 : 전북 고창·군산·익산·전주, 전남 신안·영암, 충남 서천·당진·서산·천안, 충북 청원, 경기 화성·수원·과천, 인천 옹진, 강원 원주

3. 매몰두수

지금까지 발생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등을 통해 매몰된 마리수는 472호 11,868천수(잠정집

계, 3. 30일 기준)이며, 향후 3호 124천수(감정집계)가 매몰될 예정이다.

4. 개·돼지 검사상황

개·돼지에 대한 AI 검사 결과, 돼지는 모두 음성이었고 3월 24일 이후 개에서 추가적으로 4농가(안성 1, 천안 1, 나주2)에서 항체(H5형)가 검출되어,

- 현재까지 개에서 항체(H5)가 검출된 농가는 총 7개 농가이며 22두에서 항체가 확인되었다.
- 이번에 추가적으로 항체가 검출된 농가의 '개'들*도 지금까지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AI 증상이 없는 항체 검출로 판단되었다.

* 추가 '개' 항체양성 : (안성) 4두 중 3두 항체양성, (천안) 13두 중 2두 항체양성, (나주 1) 9두 중 1두 항체양성, (나주2) 3두 중 2두 항체양성, (부여 기존농가) 1두 추가 항체양성

- 또한, 항체양성인 '개' 4마리에 대해서 부검(3. 27)을 실시한 결과, AI와 관련된 특이적 임상증상과 육안적 병변은 없었다.

5. 항체양성 개 처리방향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3. 20일 전문가 소위원회 및 3. 28일 수의학·의학·공중보건 전문가가 참여한 확대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 결과,

- 개에서 AI 항체만 검출시 바이러스 배출이 없어 항체양성만으로는 감염 위험이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항체 양성인 '개'로 인하여 사람이나 다른 개·가금에 감염될 위험은 없으므로 2회 이상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 통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 또한 항체 양성인 개는 전파 우려는 없지만, 유입경로와 특성을 밝히기 위해 호흡기·소화기 등 조직·병리 연구·조사 사업(항체 양성 개 4두, 2개월 예정)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6. 농가 지원대책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금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고, 경영안정 대책 및 적절한 수급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 살처분 농가

살처분 보상금은 현재 419억원을 배정하여 283농가에 대해 168억원(지방비 7억원 포함)을 실지급했으며, 생계안정자금도 103농가에 대해 7억원을 배정했다.

나. 이동제한 농가

소득안정자금은 이동제한에 따른 입식 지역에 따른 손실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현재 지자체 수요를 파악하고 있으며 지자체 배정 요청 시 즉시 배정할 계획이다.

다. 계열 업체

닭·오리 계열농가에 대한 원활한 대금 지원 등을 위하여 현재 95개 업체(농가)에 대해 저리(연1%)로 609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배정했다.

* 경영안정자금 : 지원규모 800억원, 2년거치 3년상환(금리 : 거치기간 1%, 상환기간 3%)

라. 토종닭 농가

판로 확보가 곤란한 토종닭 수급안정을 위

해 농협, 도축·가공장 등을 통하여 213농가·1,095천마리를 비축 완료(당초계획 1,000천마리)하여 현재 정산중이며, 정산 완료 후 이에 따른 부대경비(도계·운송·보관·박스비용)도 지원(마리당 1,200원, 13억원)할 계획이다.

○ 수급관리 : 그간 소비촉진 행사(2~3월 32회) 등으로 소비는 평년 수준으로 회복된 상태이며, 향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수급대책도 보완 추진할 계획이다. ↗

〈참고〉 AI 관련 피해농가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살처분보상금 (국비 80%, 지방비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폐기·소각되는 가축 및 그 생산물(계란, 알 등), 물건 등에 대하여 보상 * (지원기준) 축종·용도별로 살처분 당시의 산지 가격 등을 기준으로 보상금 평가단이 결정한 금액 	
생계안정자금 (국비 70%, 지방비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기간 입식이 제한되는 매몰·소각 처분 농가에게 수의 재발생 시기까지 생계 안정비 지원 * (지원대상) 산란계 및 종계(500수~20천수 사육농가), 육계(1천수~40천수) * (지원액) 통계청 전국 농가 월평균 가계비의 3~6개월분(오리 및 종계·산란계 1,375만원, 육계 687만원 한도) 	
소득안정자금 (국비 70%, 지방비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제한에 따른 정상입식 지역 농가의 소득 미발생분 및 이동제한 지역 내 사육농가의 출하 지역 등에 따른 추가 사육비, 폐사율 증가, 상품가치 하락에 대한 손실 등 보전 * (지원액) 추가 사육기간 동안의 사육비 및 폐사율, 상품가치 하락분(산지가격의 3%) 등을 감안하여 농가별 지급액 산정 	
토종닭 민간비축 지원 (국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종닭 농가의 판로 확보를 위해 농협, 도축·가공장 등이 일정물량(100만마리)을 매입·비축도록 지원(1,200원/마리) 	
특별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제한 농가 및 살처분 농가에 대해 현행 사료구매자금의 융자 지원한도와 단가를 3배 확대(지원규모 : 2,500억 원) * (현행) 농가당 3억원, 마리당 닭 0.6만원, 오리 0.9만원 → (개선) 농가당 9, 마리당 닭 1.8, 오리 2.7 * (지원조건) 금리 1.5%, 2년 균분상환 	
긴급 경영 안정 자금	가축입식자금 (이차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입식 시기에 맞추어 해당 농가의 살처분 마리수에 해당하는 병아리 구입 자금 융자 지원(지원규모 : 30억원) * (지원기준)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식하는 경우,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입식 마리수 경비 * (지원조건) 금리 3%, 2년 거치 3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일시 상환
	경영안정 자금 (이차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방역조치로 영업을 제한받는 도축장, 부화장, 가공장, 사료 업체 등에게 경영자금 융자 지원(지원규모 : 300억원) * (지원기준) 해당업체의 연간 수수료 수입, 지출액 등 경영비를 고려하여 영업 중단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 산정 * (지원조건) 금리 3%, 2년 거치 3년 상환 ○ AI 방역조치로 영업을 제한받는 비계열농가와 입식 제한농가, 계열업체에게 운영자금 융자 지원(지원규모 : 800억원) * (지원조건) 금리 1~3%, 2년 거치 3년 상환(거치기간 2년 1%, 상환기간 3년 3%)